

기본소득정치연대
2019 임시대의원대회
자료집

일시 : 2019년 8월 13일 (화) 오후 7시

장소 : 나의 봄날
(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1 5층)

[안건 순서]

보고1] 2019년 조직보고 ----- 3p

보고2] 2019년 재정보고 ----- 5p

논의1] 회칙 개정의 건 ----- 6p

논의2] 회원총회 소집의 건 ----- 13p

1. 2019년 조직 보고

- 주문사항 : 2019년 조직 보고를 확인해주십시오.

1. 조직 증감 현황

단위 : 명

지역	2018.12.31 회원수	2019.08.07 회원수	증감
총원	148	150	+2
서울	59	58	-1
경기	22	24	+2
인천	15	14	-1
충북	2	3	+1
충남	12	11	-1
대전	6	6	0
세종	0	0	0
전북	5	5	0
전남	7	8	+1
광주	5	5	0
제주	3	3	0
경북	1	1	0
경남	1	0	-1
부산	2	3	+1
울산	3	4	+1
대구	3	4	+1
강원	1	0	-1
해외	1	1	0

- 가입 회원 12명, 탈퇴 회원 10명. 총 2명 증가.
- 2019년 8월 7일 기준 조직현황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.

- 주문사항 : 2019년 재정 보고를 확인해주시시오.

1. 2019년 총 결산표

□ 총 수입

단위: 원

관	항	목	금액
수입	이월금	이월금	₩4,137,631
	회비	정기회비	₩5,232,820
		특별회비(후원금)	₩0
	회비 외	이자수입	₩667
		사업참가비	₩0
		기타	₩0
총액			₩9,371,118

□ 총 지출

단위: 원

관	항	목	금액
기본경비	사무실 설치 운영비	관리유지비	₩750,000
		비품 및 소모품비	₩0
		임차료	₩750,000
		통신요금	₩600
	인건비	급여	₩3,800,000
정치활동비	조직활동비	교육훈련비	₩0
		연대사업비	₩30,000
		조직사업비	₩834,000
		출장비	₩0
		홍보비	₩30,613
총액			₩5,445,213

단위: 원

2. 2019년 입출금 기록표

일시	내역	수입	지출	잔액
2019.01.01	이월금	₩ 4,137,631		₩ 4,137,631
2019.01.01	페이스북 광고비		₩ 30,613	₩ 4,107,018
2019.01.02	사무처장 활동비		₩ 500,000	₩ 3,607,018
2019.01.21	카드 문자 안내비		₩ 300	₩ 3,606,718
2019.01.30	사무실 운영비		₩ 100,000	₩ 3,506,718
2019.01.31	1월 회비 입금	₩ 738,430		₩ 4,245,148
2019.02.01	사무처장 활동비		₩ 500,000	₩ 3,745,148
2019.02.01	1월 회비 추가	₩ 35,070		₩ 3,780,218
2019.02.20	사무실 운영비		₩ 100,000	₩ 3,680,218
2019.02.21	카드 문자 안내비		₩ 300	₩ 3,679,918
2019.02.28	2월 회비 입금	₩ 499,320		₩ 4,179,238
2019.03.05	사무처장 활동비		₩ 400,000	₩ 3,779,238
2019.03.29	3월 회비 입금	₩ 750,000		₩ 4,529,238
2019.03.29	사무실 운영비		₩ 100,000	₩ 4,429,238
2019.04.01	사무실 운영비		₩ 100,000	₩4,329,238
2019.04.01	사무처장 활동비		₩ 400,000	₩ 3,929,238
2019.04.18	문자 충전		₩ 50,000	₩ 3,879,238
2019.04.30	깃발 제작		₩ 30,000	₩ 3,849,238
2019.04.30	4월 회비 입금	₩ 840,000		₩4,689,238
2019.05.03	사무처장 활동비		₩ 400,000	₩ 4,289,238
2019.05.03	사무처원 활동비		₩ 100,000	₩ 4,189,238
2019.05.11	이자수입	₩ 667		₩ 4,189,905
2019.05.21	사무실 운영비		₩ 100,000	₩ 4,089,905
2019.05.31	5월 회비 입금	₩ 780,000		₩ 4,869,905

2019.06.02	사무처원 활동비		₩ 100,000	₩ 4,769,905
2019.06.02	사무처장 활동비		₩ 400,000	₩ 4,369,905
2019.06.19	사무실 운영비		₩ 100,000	₩ 4,269,905
2019.06.24	문자 충전		₩ 50,000	₩ 4,219,905
2019.06.28	텀블러 주문		₩ 647,000	₩ 3,572,905
2019.06.28	6월 회비 입금	₩ 760,000		₩ 4,332,905
2019.07.01	사무처원 활동비		₩ 100,000	₩ 4,232,905
2019.07.01	사무처장 활동비		₩ 400,000	₩ 3,832,905
2019.07.16	사무실 운영비		₩ 150,000	₩ 3,682,905
2019.07.26	택배 발송비		₩ 87,000	₩ 3,595,905
2019.07.31	7월 회비 입금	₩ 820,000		₩ 4,415,905
2019.08.03	사무처원 활동비		₩ 100,000	₩ 4,315,905
2019.08.03	사무처장 활동비		₩ 400,000	₩ 3,915,905
2019.08.05	회비 직접납부	₩ 10,000		₩ 3,925,905
수입/지출 합계 및 잔액		₩ 9,371,118	₩ 5,445,213	₩ 3,925,905

1. 회칙 개정의 건

- 주문사항 : 아래의 회칙개정안을 의결해주십시오.

1. 개정근거

- 기본소득정치연대 회칙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대의원대회 제6조(권한) 2항 “회칙의 제정 및 개정”

2. 회칙 개정 취지

- 현재 우리 단체의 규모에서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10여명의 대의원만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 회칙상 절차적 문제는 없지만 더 많은 회원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의결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따라서 사업계획 등 일상적인 의결은 대의원대회의 권한으로 유지하되, 조직방침과 회칙의 제·개정, 대표 탄핵등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은 회원총회를 통해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함.
- 현행회칙 [별첨1]

3. 회칙 개정안

현행	개정
제3장 의결기구	<p><u>제3장 의결기구</u></p> <p><u>제1절 회원총회 (전체 신설)</u></p> <p><u>제6조(구성)</u></p> <p><u>①회원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된다.</u></p> <p><u>②의결권은 총회일 기준 6개월간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제한된다.</u></p> <p><u>③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대표가 맡는다.</u></p>

	<p><u>제7조(권한)</u></p> <p>① <u>본회의 최고 의결기관</u></p> <p>② <u>회칙의 제정 및 개정</u></p> <p>③ <u>조직 방침, 조직 해산 등 조직진로 의결</u></p> <p>④ <u>대표탄핵안에 대한 의결</u></p> <p>⑤ <u>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</u></p> <p><u>제8조(성립 및 의결)</u></p> <p>① <u>총회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. 다만 총회 1일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재석을 인정한다.</u></p> <p>② <u>총회안건에 대한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.</u></p> <p><u>제9조(소집 및 안건발의)</u></p> <p>① <u>회원총회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이 있거나,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30일 내에 소집해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총회 안건은 대의원대회 발의, 회원 발의가 가능하다. 회원발의의 경우, 재적인원 2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진다.</u></p>
<p><u>제1절</u> 대의원대회</p> <p>제6조(구성)</p> <p>① 대의원 정수는 회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.</p> <p>② 운영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.</p> <p>③ 본회에 할당된 노동당 대의기구 구성원은 본회 대의원 대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.</p> <p>④ 대의원 정수에서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</p>	<p><u>제2절</u> 대의원대회</p> <p>제10조(구성)</p> <p>① 대의원 정수는 회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.</p> <p>② 운영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.</p> <p>③ 본회에 할당된 노동당 대의기구 구성원은 본회 대의원 대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.</p> <p>④ 대의원 정수에서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</p>

<p>숫자만큼 선출직 대의원을 둔다. 선출직 대의원은 당적과 무관하게 모든 회원이 입후보할 수 있다.</p> <p>⑤ 대의원대회 의장은 본회의 대표가 맡는다.</p> <p><u>제7조(권한)</u></p> <p>① <u>본회의 최고 의결기관</u></p> <p>② <u>회칙의 제정 및 개정</u></p> <p>③ <u>예산과 결산의 심의, 의결</u></p> <p>④ <u>감사,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</u></p> <p>⑤ <u>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</u></p> <p>⑥ <u>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, 의결</u></p> <p>⑦ <u>기타 회칙에 따른 권한</u></p>	<p>숫자만큼 선출직 대의원을 둔다. 선출직 대의원은 당적과 무관하게 모든 회원이 입후보할 수 있다.</p> <p>⑤ 대의원대회 의장은 본회의 대표가 맡는다.</p> <p><u>제11조(권한)</u></p> <p>①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, 의결</p> <p>② 예산 및 결산의 심의, 의결</p> <p>③ 감사,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</p> <p>④ 정치방침에 관한 의결</p> <p>⑤ 기타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</p>
<p>제12조부터 모든 조항</p>	<p>삽입된 조항의 수만큼 조항의 순번 변경</p>

2. 회원총회 소집의 건

- 주문사항 : 다음과 같이 회원총회를 소집을 의결해주시오.

1. 소집근거

- 개정된 기본소득정치연대 회칙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회원총회 제9조 (소집 및 안건발의) 1항 ‘회원총회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이 있거나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30일 내에 소집해야 한다’

2. 개요

- 일시 : 2019년 9월 1일(일) 오후 2시
- 장소 : 추후 섭외 (서울)

3. 회원총회 안건

[보고안건]

- 보고안건1. 조직 보고
- 보고안건2. 재정 보고

[논의안건]

- 논의안건1. 기본소득정치연대 조직 진로에 관한 건

4. 총회준비

- 총회준비팀을 설치하여 회원총회의 실무적 준비 및 안건 성안을 준비한다.
- 안건 성안은 8월 19일~30일 전국순회 토론회를 거쳐 확정한다.
- 전국순회 토론회와 관련된 실무는 총회준비팀에서 담당한다.